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인증제 시행 안내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3.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5526호, 2018.3.27.)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28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하려는 승강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건설공사의 완공 지연 또는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를 구매·설치하는 계약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회원사 등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를 판매·설치한 승강기에 대해서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고,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할 수 있으며, 해당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판매중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고, 승강기의 교환이나 대금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조달청장, 대한건설협회장, (사)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승강기 설치공사 발주자

주무관 문상인 공업사무관 남승희 승강기안전과 전결 2019. 9. 24.
장 박종현

협조자

시행 승강기안전과-2930 (2019. 9. 24.)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507호

전화번호 044-205-4294 팩스번호 044-205-8910 / moonsangin@korea.kr / 비공개(5)